

감사 결과 (한국산업단지공단 비위 조사)

1. 감사개요

☐ 감사배경

- '23. 3월 국조실에서 통보한 한국산업단지공단(이하 '공단') 직원의 개인 정보 무단 열람 비위 사항에 대해 징계가 보류되고 비위자가 승진되었다는 언론 보도*가 있어, 이에 대해 감사실시

* "산단공, 직원 메일사찰에 징계는커녕 승진..."(프레시안 '24.4.22.)

< 비위 내용 >

- ① (국조실 비위 통보) 공단 인재개발팀 前 노무담당 직원 A는 지방노동위 대응을 위해 해임된 직원(B)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
- ② (언론보도 내용) 前 노무담당 직원 A가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승진, 징계보류 과정*에 대한 조사 필요

* 공단 감사실은 국조실의 보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 (국조실은 이에 대해 조사 요청)

※ 진행경과 : ①국조실 통보('23.3.13.) ②공단 조치결과(주의)회신(5.25.) ③개기관 회의(6.20.) ④공단 징계(경고)로 의견 변경(7.27.) ⑤공단 징계요구 보류(8.1.) ⑥비위자승진('24.1.1.) ⑦산업부 감사착수(5.20.)

☐ 감사기간 : 2024. 05. 20. ~ 05. 31(10일)

☐ 처분요구일 : 2024. 07. 17

2. 감사결과

- (확인사항) 개인 이메일 무단 열람·유출자에 대해 수사 착수 여부 확인 없이 징계의결요구를 보류*하여 비위자가 승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, 비위자에 대한 징계수위 검토('경고')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

* 공단 감사실은 보류과정에 국조실의 보류지시가 있었다고 하나 확인된 사실 없음

- (조치사항)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위자에 대해 '수사의뢰(2명)'하고, 비위 검토 및 징계의결요구를 태만히 한 감사실 직원은 '중징계, 온정적 처분 발생 구조*'에 대해서는 '시정요구' 등 추가 조치

* 공단은 '공공감사기준(감사원규칙)과 다르게 '경고'를 징계의 종류로 운영하여 온정적 처분 가능

① 비위자 징계의결요구 부당 보류 및 징계수위 미흡

- (징계의결요구 부당 보류) ‘수사중’이 아님에도 문서에 징계의결요구 보류 사유를 ‘수사중’으로 적시하고, 사실 확인 없이 방치하여 비위자 A가 인사위원회 징계 회부 없이 승진(3급→2급)하는 결과 발생

※ 공단은 국조실의 보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,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고 공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없음

- (개인정보 무단열람·유출자 징계수위 미흡) 공단 감사실은 ‘경고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(현재 징계위 의결 보류중), 산업부 감사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*으로 엄정 조치 필요

*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, 정보통신망법 제48조·제49조, 임직원행동강령 등 위반

- (비위 행위에 대한 감사실 검토 소홀) 국조실 조사 후 산업부의 조치 요청에 대해 공단 감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위반사항으로 본 유권해석을 미반영* 하는 등 부실 검토

* 공단 감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메일 무단 열람 및 유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소지가 있음을 회신 받았으나 위반 법령 검토시 미반영

② 징계 및 승진제한 규정 운영 미흡

- (징계 관련 규정 정비 필요) 「공공감사기준」과 다르게 ‘경고’를 「인사규정」상 징계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여, 감사기관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처분 감경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온정적 처분 다수 발생*

* ① 감사원·산업부·국조실 ‘징계’ 요구 → 징계위 ‘경고’ 의결(4건) ② 자체감사 ‘견책’ 요구 → 징계위 ‘경고’ 의결(2건), ③ 감사원·산업부 ‘경고·통보’ → ‘경고’ 의결(2건)

- (승진제한 규정 개선 필요) 승진후보자 검토시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‘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’를 승진 제한 대상에 미포함

3. 조치계획

□ 비위 관련자 : “수사의뢰” , “중징계” 등

-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비위자(A, C) : ‘수사의뢰 2명’
- 징계의결요구 및 비위검토 관련 직무 태만자(D) : ‘중징계’

○ 기타 비위 관련자 : '주의 · 통보(인사자료) 요구' 등*

* 무단유출 관련 관리자(前 인재개발팀장 E)-'주의', 징계의결요구 관련 관리자(前 감사실장 F 퇴직)-'통보(인사자료)', 비위행위 부실 검토-'통보'

□ **징계 및 승진제한 규정 운영 미흡 : “시정 · 권고”**